



조교임용 규정

제정일	1993. 9. 1
개정일	2022.11. 1
개정차수	5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조교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범인정관이 정하는 조교에게 적용한다.

② 조교 임용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조교라 함은 실험실습 보조, 학사 및 사무행정 등에 있어서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원으로서의 조수를 말한다.

제 4조 (정원) ① 조교는 학과별 1명을 두며 학생정원(학사학위 정원 포함)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둔다. 단, 각 학과의 교육과정, 학생정원,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의 조교는 대학의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1. 1]

제 5조 (자격) 조교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무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7.22)

제 6조 (신규임용) 조교의 신규임용은 학부(과)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7.22)

제 7조 (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에 대해서는 실험실습 보조활동, 학사 및 사무행정 등에 있어서의 보조역할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일 경우 총장이 재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로서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7조의 2 (계약의 체결) 조교는 임용 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는 임용기간, 보수,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 7.22]

제 8조 (임기)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9조 (보수) 조교의 봉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복무) 조교의 복무, 포상, 징계 등에 대하여 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가. 시행일 이후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학과는 조교의 최대근무기간 만료일부터 제4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한다.

나. 부칙 경과규정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일 다음날부터 제4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한다.